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The Law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위인백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In-Baek Wee(wibaksa@kwu.ac.kr)

요약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 국제결혼 | 여성결혼이민자 | 인권 | 사회통합 | 다문화가족지원법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ith a view to legal system how to get over the adaptation problem as well as protection of human right about the cases of marriage immigration have sharply increased in Korea through Globalization and this brought about serious matters to multi-cultural families : disguise marriage, contract marriage, frequent divorces, especially conflict, violence, maltreatment of couple is guaranteed efficiently include against mankind universal value regardless of race, class, region undergoing farm village female marriage immigrants by cultural difference.

This study is when the families of the marriage immigrants are left unattended in the state of the crisis, it definitely seems to be a serious obstacle for social integration and cost vast social expense.

Therefore, I suggest the problems of multi-culture family support law and improvement plans for Marriage bureau agency management law and nationality Act through a comparative method about legislation of each country which has dealt with a phenomenon called 'multi-cultural Society' and fact-finding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professing "the city of human right"

■ keyword : | Multi-Cultural Families | International Marriage | Female Marriage Immigrants | Human Rights | Multi-culture Family Support Law | Social Integration |

접수번호 : #110124-006
접수일자 : 2011년 01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3월 23일
교신저자 : 위인백, e-mail : wibaksa@kwu.ac.kr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함께 시작된 세계화 물결 속에서 한국에도 100만 명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다[1].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체류 유형이 다양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2],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문제를 둘러싼 급격한 사회변화는 사회통합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주의 여성화'[3] 현상과 맞물려 결혼을 통한 이주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한국 남성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 형태를 띤다. 이는 한국 여성들이 농촌과 도시 빈곤층 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만혼의 남성 장가보내기 차원에서 정부가 결혼이민정책을 실시하여 농촌 남자들이 중국 연변지역 여성들과 혼인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본격화 되었으나 그동안 잦은 이혼과 위장결혼, 계약결혼의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국제결혼의 주 대상이 동남아시아지역 여성들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한국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에서 중국이 66.2%, 베트남이 18.7%, 일본이 4.0%다.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최근 5년 만에 약 600% 증가하였다. 2006년도 농림부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 결혼기간이 4.4년이었는데, 일본여성이 9.2년, 필리핀 여성이 4.8년, 중국여성이 3.8년, 베트남 여성이 1.4년으로 나타났다[4].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평균연령은 34.3세이고, 남편은 평균연령이 41.3이다. 출신 국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이 26.7세, 그들의 남편은 38.1세로 평균 12년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여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연령구조가 부부갈등, 부

부간의 폭력과 학대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다문화주의 담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는 인류공영과 호혜평등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치적 비전을 표방하고 문화다원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2006년 4월 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다문화주의를 사회통합의 원리로 내세웠고, 이는 수용국가로서의 필요성에 의해 받아들이는 다양한 이민자에게 '통합'에 대한 공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다문화주의 정책의 기본목표이기 때문이다.

사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위기를 해결할 대상으로 언어화되는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합지원방안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그 기본 틀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인구대체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 의한 '인신매매적' 현실은 거의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피해에 관심을 가지는 것 보다는 '사회통합담론'으로 급선화하여 결혼이주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즉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공포되어 동년 7월 18일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9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등이다.

국제결혼의 조기 실패는 결혼이민 여성이 문화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그들에 대한 이해 부족문제와 인류의 보편적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관련법의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와 여타지역과 달리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법의 개정방안은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가. 조사체계

조사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유효 응답자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140명
조사기관	(사)한국인권교육원
조사기간 및 방법	2010년 5월 1-30일. 방문 및 교육현장에서의 설문조사
실사수행기관	(사)한국인권교육원, 광주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나. 표본추출방법

이 조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광주광역시의 동구에 47명, 서구에 91명, 북구에 232명, 광산구에 256명 등 실 거주자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250부 배포하였으며, 대학생들과 가정과 직장 및 교육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하였다.

다. 표본 틀

이 조사에서 (사)한국인권교육원이 주체가 되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 틀을 마련하고, 전체 2,807명에서 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광주여대와 조선대 학생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직접 작성한 것을 회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206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무응답이나 결측치가 많은 66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0부를 분석하였다.

라. 자료분석

자료검증과 전화보완조사를 거친 최종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으로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비교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

2006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남자와 외국 여자간의 혼인은 30,208건으로 2005년에 비하여 3.1%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여성이 외국인 처의 81.9%를 차지하여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은 2005년에 이어 7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결혼과정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 중 41%가 외국여자와의 혼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의 혼인구성비는 15.1%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한국 남자의 초혼구성비는 2000년 보다 11.8% 감소추세를 보이고 특히 혼인연령차가 11.5세로 한국인 남녀 부부보다 4.8배가 더 높아 결혼시장의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결혼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전의 과정부터 한국사회의 적응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인권침해적인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형성한 다문화가정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언어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문제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90% 이상이 대화를 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비추어보면[5], 언어미숙으로 인해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서로간의 오해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과 연령차이가 큰데서 오는 의치증, 국제결혼에 대한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남성들은 이주여성을 평등한 배우자라기보다는 큰돈을 들여 사온 소유물의 개념이 강하다. 이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이 있다. 또한 모성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의 과정에서도 건강권과 모성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한국사회의 편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해 부족에 따른 정착과정의 어려움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에 대한 선행연구

갈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관찰가능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며, 감정은 불안정상태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갈등도 불안정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과정은 예측하기 힘들고 예기치 않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반향성이 있다[6]. 부부갈등은 결혼으로 결합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상충되는 욕구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정의 되고 있다[7]. 이러한 부부는 성장배경과 개인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아도 쉽게 갈등상황에 빠지기 쉽다. 부부가 갈등상황에 빠지게 되면 부부를 둘러싼 많은 상황들이 갈등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가족문제보다 부부갈등, 특히 심리적,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 폭력은 결혼 관계를 해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이 늘어가면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제결혼이혼율은 약 8%, 한국인의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율은 약 5.2%이며 그 외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가출 등 혼인 중단 경우를 포함하면 정상적인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국제 결혼이민자 수는 훨씬 많으며, 2007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5,79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혼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성적학대의 양상과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남편과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가출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결혼이민자가족이 갈등을 일으키는 공통문제는 무엇보다 결혼이민여성의 언어 미숙에 따른 의사소통 장애가 대표적이다. 국제결혼의 부부가 대화 시에 90% 이상이 한국어를 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에 있다고 보여 진다[8]. 결혼초기에는 서로 이해를 하고 인내하지만, 장기간의 일상적인 대화의 차단은 부부의 친밀감과 상호간의 이해를 방해하고 심각한 부부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이 부부생활을 함에 있어 결혼이주여성과 언어적 소통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

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9].

더욱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한국 남편의 전형적인 태도, 즉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동반자인 아내로서 대하기보다는 지시적이고 억압적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하는가 하면, 남편의 술과 담배, 도박, 자녀양육방식,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에서 갈등을 느낀다. 특히 알코올 중독, 폭음하는 음주문화 등으로 아내와의 갈등과 폭력을 행사하며, 도박, 외도, 등으로 인한 잦은 외박 등도 이주여성이 호소하는 남편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장애나 알코올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부폭력은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되고 있다[10].

국제결혼이 갖는 다양한 통로에 의해 맺어지는 결혼의 '거래적'인 성격, 외국인 배우자들의 출신국에 대한 무시 등이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어려움을 가져온다 [11].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의사소통 어려움, 사회복지서비스욕구, 결혼사기피해, 문화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소외감 등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여성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의사소통교육과 가정폭력대책 서비스, 이들 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국적취득완화정책 등을 제안하였다[12].

3. 유엔인권도시를 지향한 광주광역시 결혼이주여성 현황

광주광역시 전체 국제결혼건수는, 2008년 12월 기준 결혼건수 8,472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건수가 649건이며,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비율을 각 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구는 7.4%, 서구는 19.6%, 남구는 11.6%, 북구는 35.1.0%, 광산구는 26.3%이다[13].

2000년부터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아내는 3,728명인데 이를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117명, 베트남 762명, 필리핀 284명, 일본 118명, 캄보디아 98명, 몽골 92명, 우즈베키스탄 49명 기타 및 미상

이 128명이다.

III. 연구결과

2010년 5월에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응답자 206명 중 베트남 36%(74명), 필리핀 31%(64명), 중국 21%(43명), 캄보디아 8%(16명) 순이며, 무응답 4%(9명)이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통일교를 통한 선교목적으로 일본 및 필리핀 여성들이 유입되었고, ‘한민족 하나 되기’ 운동차원에서 만혼의 농촌 총각들과 조선족 중심의 중국여성들이 유입되었다.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건수가 증가한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러 온 1995년 이후부터이며, 2001년부터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4]. 2008년 9월 현재 한국의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 중국이 55.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이 2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조사 결과, 배우자와 대화할 때 쓰는 언어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어 80%, 영어 5%로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경험에 대하여, 약간 많다 11.3%, 보통이다 13.8%, 별로 많지 않다 10%로 나타났다. 돈을 주고 사온 여성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의 유무에 대해, 매우 많다 1%, 약간 많다 2.5%, 보통이다 20.5%, 별로 많지 않다 6%로 나타났다. 배우자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약간 많다 3.7%, 보통이다 8.5%, 별로 많지 않다 4%로 나타났다. 배우자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다 3.5%, 약간 많다 1%, 보통이다 30%, 별로 많지 않다 8.5%로 나타났다. 의처증 때문에 외출을 통제 받은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많다 1%, 약간 많다 3.7%, 보통이다 22.5%, 별로 많지 않다 3.7%로 나타났다. 알코올이나 음주폭행, 상습도박, 마약 등 배우자의 습관적 중독성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간 많다 2.5%, 보통이다 18%, 별로 많지 않다 5%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조사결과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한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언어폭력(31%)이 가장 많고, 신체적 폭력(26.5%), 성적 학대(23.1%), 위협(18.4%)순과 유의미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의처증에 의한 외출 통제 문항에서 보여 지듯이 외국인 배우자를 통제하고, 성적 강요와 구타 등 학대의 양상과 정도가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식과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 며칠 만에 살해되는 등 결혼당사자들의 부부갈등에 따른 인권유린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V. 외국 입법례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여 이주민들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동화시키려는 동화주의를 넘어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주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스웨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편주문신부(Mail-Order Bride)’의 형태로 동유럽 여성들이 유입되면서 국제결혼시장은 팽창하였으나, 카자흐스탄 여성이 전에 다른 이주여성과 혼인하여 가정폭력을 휘둘러 기소되었던 경험이 있는 남편에 의해 살해된 King 사건 이전까지는 이주여성을 보호할 만한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1984년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서비스업종의 발전으로 농촌 총각들의 배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였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자 업체들 스스로 이런 남성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계약서 내용을 상세화 하는 등 인권의식을 어느 정도 갖추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국제결혼 브로커규제법과 일본의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 법률에

대하여 살펴본다[15].

1. 국제결혼 브로커규제법(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미국은 2006.1.5. 양원 합의 발의에 의하여 ‘국제결혼 브로커규제법(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IMBRA)’이 입법·발효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이 개정되면서 동 법에 새로 들어간 이 법령은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브로커와 미국 결혼희망자의 자격 등을 규제하며, 국제결혼 중개업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되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위한 제반권리와 보호를 보장받게 된다. 총 8개 장(Sec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안은 아래 5가지 내용으로 압축될 수 있다.

- ① 범죄 신상정보 공개 : 약혼자 비자를 접수시키려는 미국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행정국(United State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에 대하여 범죄에 관련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된 범죄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및 유기, 테이트강간, 노인 학대, 스토킹 등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폭력과 살인, 과실치사, 강간, 성 착취, 근친상간, 고문, 인신매매, 노예 노동, 인질 행위, 비자발적 노역, 노예 매매, 납치, 유괴, 불법 감금 등의 중범죄, 그리고 그 외의 다른 폭력적인 범죄 관련 혹은 연쇄적인 알코올 혹은 약물 중독 등을 들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같은 정보를 다른 미국인 배우자의 신상 정보와 더불어 외국인 약혼자 혹은 배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Section832조).

- ② 약혼비자 및 배우자비자 신청 횟수 제한 : 국토안보부가 특별히 명령하지 않는 한 미국인 배우자가 과거 2년 이상 약혼비자 혹은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경우, 혹은 과거의 비자신청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약혼자 혹은 배우자 비자의

보증을 허락하지 않는다. (Section832조)

- ③ 배우자의 기록 정보 : 정부는 상습적인 약혼자 혹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이의 기록을 보관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통보한다. 통보가 요구되는 경우는 과거 10년간 3번 이상의 배우자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 이로 정한다. (Section832조)
- ④ 가정폭력법과 배우자의 범죄기록 안내 : 내무부(DOS),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등은 이주여성을 위하여 가정폭력법과 관련 자료에 관한 팜플렛을 작성하여 이주여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팜플렛은 모든 결혼이주여성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국토안보부(DHS)는 배우자의 범죄기록 등을 결혼 이주여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여성과의 연락을 주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2만 5천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국 대사관은 결혼 관련 인터뷰를 시행할 시 구두로 결혼 상대자의 범죄기록 등에 관하여 여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안보부와 내무부는 피해자의 신상명세와 주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결혼 중개업자의 의무 :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미성년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결혼 중개업자는 여성의 자국어로 작성된, 남성의 신상 정보, 폭력에 관한 범죄기록, 성적 범죄기록 등을 제공하고 가정 폭력법과 그 밖에 관련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여성과의 연락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만 5천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 법률

일본은 국제결혼중개업은 자유업에 속하여 그 업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독자적 시스템이나 독립 법률은 없으나 관련된 몇 개의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계약관계에서 해약이 쉽지 않다는 점과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

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중개업을 규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결혼중개업체가 사생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을 규제하며, 국제결혼에 반드시 수반되는 입국수속, 관청에 신고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결혼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 50% 이상의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것이 결국 중개업자의 자질과 중개과정상의 문제 때문이라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개발 중이다.

가.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특정상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구입자 등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방지를 도모함으로써 구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상품 등의 유통 및 역무의 제공을 적절하고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특정상거래’란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거래 등을 말하는데 국제결혼 중개업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자는 상품 혹은 권리의 가격, 지불시기 및 방법, 인도시기 혹은 권리 이전시기, 매매계약의 신청철회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상대 소개 서비스 개요 서면」과 「결혼상대 소개 서비스 중요사항확인서」를 제시하고 「결혼상대 소개 서비스 입회서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시, 1년 이내로 업무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나. 일본 소비자 계약법

이 법률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보의 질과 양 및 교섭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행한 일정의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혹은 곤란을 겪은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신청 혹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과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효로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

의 옹호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고도정보통신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하게 확대된 것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하여 기본이념 및 정부에 의한 기본방침의 작성 및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배려하고, 또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하여 사생활보호정책을 자체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장관이 명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개의 법률은 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일본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라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앞서 본 법률에 기초하여 업체에서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 남성의 입회 자격 요건을 규정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부가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3. 국제결혼중개업소 관리 대책

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중개업체 관리 방안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 2005년부터 자녀를 적게 갖는 소자화시대의 결혼산업의 양태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시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해당 연구회는 출생률 감소, 만혼화, 미혼화 요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와 그 맥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젊은 층의 결혼을 지원하고 결혼정보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

회의 중점 업무이다.

나. 결혼중개업체의 자체 지침

결혼중개업체들은 연맹 혹은 연합회를 통하여 업계의 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50% 이상의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것이 결국 중개업체의 자실과 중개과정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체 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출신국의 수탁업자의 능력, 사후관리 및 결혼관련 서류 작성, 본국 남성의 가정폭력 및 기타 가정해체 요인 사실을 선별하여 입회허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및 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이 자체 지침의 내용이다.

V. 우리 현행법안의 검토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과 법은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고 문화적 차이를 긍정하게 다루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지칭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월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피해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을 발의한 후, 중개업체가 현지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결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할 수 없으며, 중개업체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2008년 6월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16]. 그러나 이 법은 허위정보에 의한 이주여성의 피해나 결혼의 파탄을 막기 위해 규정된 법이라기보다는 한국남성의 소비자권리를 강조한 법이라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에 의거하여 구성된 피해 보상의 개념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은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로 중개료를 지불하는 이용자인 한국남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서 소비자는 한국인으로서 국제결혼희망자이며, 사업자는 중개업자, 물품이나 용역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이주여성의 허위정보에 의한 피해나 보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중개료를 중개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권리를 획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불한 이주여성은 위장결혼사범으로 구속하고 추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주여성은 구매하여 경험한 후 마음에 안 들면 반환이 가능하고 가출하거나 도주하면 환불이 가능한 물품으로 설명(동법 제10조2항)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은 위장결혼 의심자 혹은 물품이나 용역에 불과한 사회적 지위 이외의 다른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결혼중개업관리법>은 결혼중개업을 소비자기본법 영역에 위치시킴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더욱 상품화시킴은 물론 여성인권 유린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이용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에는 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결혼 중개업자와 각 나라 브로커들의 위계화 된 하청 구조는 여성을 한국으로 이주시키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17].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한국남성에 대한 나이, 직업, 초혼·재혼여부, 학력, 경제력, 가족 상황 정도뿐이며 나머지의 정보는 부정확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들은 강요된 ‘성적 결합’(합방)을 통해 결혼을 강요하는 등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배후에는 중개비용지급자인 한국 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

성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절반에 가까운 44%가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편에 대한 범죄기록과 같은 신상정보를 통보받지 못하기 때문에 착취, 폭행, 자살 및 살해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자국어로 작성된 한국 남성의 신상정보, 폭력에 관한 범죄기록, 성범죄 기록 등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이다. 중개업체는 남성이 지불하는 결혼 비용에 비해 부실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적인 중개를 한 중개업자는 입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 법이다. 이 법에서 이주여성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체제는 제1단계로 입국해서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동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단계 임신·출산시기(동법 제9조), 제3단계 아동 양육기(동법 제10조), 제4단계는 역량강화 혹은 노동시장 진입기(동법 제11조, 제12조)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는 한국 중산층 여성의 삶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중산층 여성들도 계층적 구조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은 재혼자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남편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대책의 방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그 기본 틀로 한다[18]. 즉 동법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법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한국 남성과 혼인을 하였으나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2년 혹은 1

년 이상 주소가 계속 없었던 경우(국적법 제6조2항4호)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부부관계 및 사회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주여성은 국적신청 이후에도 위장결혼이라는 의의가 없음이 파악될 때까지 국적부여를 늦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이주여성의 희망과 경력에 상관없이 국제이주로의 진입단계부터 철저하게 한국가족에 통합되거나 탈속련자로 평준화되어 취급됨으로써 이주여성의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많다.

3. 국적법과 체류권의 문제

2004년에 간이귀화제도가 만들어져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길목을 열었다. 그 후 2005년 9월 25일자 조치로 혼인파탄 귀책사유가 한국인에게 있음이 입증될 경우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또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혼인파탄 귀책사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6년 5월 9일자로 법무부는 귀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이주여성을 위해 여성단체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 10일 법무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국은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VI. 결론

현재 동남아시아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은 국제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난한 제3국 여성이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심한 경우 매매혼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기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각국의 개발 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빚어낸 '빈곤의 여성화'로 인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이주자 중 여성이주자들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은 가사노동이

나 공장 노동, 성산업에서 일 하며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노동자 비자를 얻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 들지만, 결혼의 경우 자본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주여성의 현실 때문에 제3국 여성들과 한국남성들 사이의 국제결혼이 이주와 인신매매 경계선 사이에 놓이게 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구타와 폭행, 의처증으로 인한 외출통제, 성행위의 강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국 남성과 혼인을 하였으나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2년 혹은 1년 이상 주수가 계속 없었던 경우, 아이가 없다는 것은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과 사회에 충분히 적응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 이주여성은 국적신청 이후에도 위장결혼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부부의 갈등으로 합의하에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실한 경우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인권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민족·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적법> 등의 법률에 대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요소가 있는 다음과 같은 관련조항의 개정은 반듯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는 물론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된 삶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우리의 다름을 인정 한 연후에 우리와 다른 그들의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정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민의식제고에 앞장 서야 만이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될 것이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조 (정의) 1.~ 5.(현행과 같음) 6. "이용자"란 제25조 1항의 "이용자"를 말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4.(현행과 같음) 5. 폭력과 성폭력에 관한 범죄기록 제공 방법과 동의서에 서명 등에 관한 사항 6. (현행 5호와 같음)
제26조 (벌칙) ①1.~3. (현행과 같음) 4. 제10조 2항 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과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2. <국적법>

개정안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1.~3.(현행과 같음) ② 1.~3.(현행과 같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또는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실한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참 고 문 헌

[1] 법무부 보도자료, "체류외국인 100만 명 돌파!", 2007. 8. 24.
 [2] IMO, 국제이주자보고서, 2005. 6. 21.
 [3] 이혜경,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이주여성인권국제포럼, p.18, 2005.
 [4] 이순형,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 안」, 농림부, 2006.
 [5] 옥경희, 박미정, "2009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지역사회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p.95, 2009.
 [6] 최외선, 현은민, 전귀연, 「결혼과 가족」, 정림사, 2008.
 [7] J. C. Coleman, Intimate relationship,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1984.

- [8] 충남여성개발원, *충남거주 외국인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2003.
- [9] 김상임,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10] 강성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농림부 농촌결혼이민여성 가족지원사업자료집, pp.121-125, 2007.
- [11]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p.21, 2006.
- [12] 양철호,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 pp.127-149, 2003.
- [13] 김경신, “2008년도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 「광주광역시 2008년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광주광역시, p.12, 2009.
- [14] 최경숙,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15] 박지영,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8-83, 2008.
- [16]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
- [17] 고현웅,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실태조사」,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2005.
- [18] 국가인권위원회, 「이주관련 국내법 현황 및 국제기준 이해」, p.145, 2010.

저 자 소 개

위 인 백(In-Baek Wee)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2002년 7월 ~ 현재 : 국제 엠네스티 광주·전남지부 이사장
- 2003년 4월 ~ 현재 : (사)한국인권교육원 원장

- 2006년 9월 ~ 2009년 8월 : 조선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초빙교수
- 2006년 3월 ~ 2010년 8월 : 광주 여자대학교 경법과 겸임교수
- 2010년 9월 ~ 현재 : 광주여자 대학교 경찰법학과 전임교수

<관심분야> : 인권법, 헌법, 형사소송법, 회사법